

의안번호	2125786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3. 12. 21.
추 계 번호	23C4996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5 (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·화재 또는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1. 응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.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3. 안전교육 제공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7조의5 (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(안 제27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가구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한해 「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」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285억 1,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
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명확한 수혜가구 수와 필요
한 장비 및 인력의 수를 산출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
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
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nabo.go.kr